

## 한남대학교 학칙

1983. 3. 1. 제정	1983. 12. 27. 변경	1984. 9. 18. 변경	1985. 8. 30. 변경
1986. 3. 1. 변경	1987. 3. 1. 변경	1987. 9. 1. 변경	1989. 5. 2. 변경
1990. 3. 1. 변경	1991. 5. 14. 변경	1992. 3. 1. 변경	1992. 5. 18. 변경
1993. 3. 31. 변경	1993. 9. 1. 변경	1994. 2. 21. 변경	1994. 12. 13. 변경
1996. 3. 1. 변경	1996. 11. 20. 변경	1997. 3. 1. 변경	1998. 3. 1. 변경
1998. 6. 1. 변경	1999. 3. 1. 변경	1999. 7. 28. 변경	1999. 11. 1. 변경
2000. 2. 1. 변경	2001. 3. 1. 변경	2002. 1. 3. 변경	2002. 3. 1. 변경
2003. 3. 1. 변경	2003. 9. 1. 변경	2003. 10. 17. 변경	2004. 3. 1. 변경
2004. 6. 8. 변경	2004. 6. 15. 변경	2004. 8. 10. 변경	2004. 10. 5. 변경
2004. 11. 2. 변경	2004. 12. 1. 변경	2005. 2. 4. 변경	2005. 2. 23. 변경
2005. 4. 26. 변경	2005. 8. 23. 변경	2005. 10. 18. 변경	2005. 12. 27. 변경
2006. 2. 6. 변경	2006. 3. 21. 변경	2006. 4. 25. 변경	2006. 5. 23. 변경
2006. 9. 26. 변경	2006. 11. 28. 변경	2007. 3. 1. 변경	2007. 9. 1. 변경
2007. 12. 12. 변경	2008. 10. 1. 변경	2008. 10. 9. 변경	2009. 1. 19. 변경
2009. 9. 8. 변경	2010. 9. 28. 변경	2010. 12. 10. 변경	2011. 1. 13. 변경
2011. 2. 8. 변경	2011. 5. 11. 변경	2011. 9. 6. 변경	2011. 11. 8. 변경
2011. 12. 6. 변경	2012. 4. 10. 변경	2012. 5. 9. 변경	2012. 7. 19. 변경
2012. 11. 15. 변경	2013. 2. 6. 변경	2013. 5. 10. 변경	2013. 11. 14. 변경
2014. 1. 23. 변경	2014. 6. 10. 변경	2014. 8. 19. 변경	2015. 3. 17. 변경
2015. 6. 9. 변경	2015. 11. 4. 변경	2015. 12. 8. 변경	2016. 2. 3. 변경
2016. 6. 14. 변경	2016. 11. 15. 변경	2017. 1. 25. 변경	2017. 3. 29. 변경
2017. 4. 26. 변경	2017. 7. 7. 변경	2017. 11. 7. 변경	2018. 2. 1. 변경
2018. 5. 28. 변경	2018. 8. 30. 변경	2018. 12. 29. 변경	2019. 4. 24. 변경
2019. 6. 20. 변경	2019. 7. 25. 변경	2019. 11. 18. 변경	2019. 12. 30. 변경
		2020. 3. 11. 변경	2020. 5. 4. 변경

(※ 관련 내용만 발췌)

### 부 칙

- ①(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2015년 모집단위 학과(전공)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는 다음표에 의한다.

학과	존속 기간	해당 학과에 입학한 자가 복학 또는 재입학할 시	
		해당학년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경우	해당학년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국어국문학과, 문예창작학과, 영어영문학부 (영어영문학전공, 아동영어학전공)	2017학 년도까지	해당학과의 해당학년으 로 복학 및 재입학	아래 표와 같이 복학 및 재입학하거나, 본인이 희망하는 학과(사범계열 및 간호학과, 건축학전공은 제외)로 복학 및 재입학 할 수 있음

일어일문학과, 프랑스어문학과, 사학과, 철학상담학과, 컴퓨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광·센서공학과, 멀티미디어학부 (멀티미디어공학전공, 미디어영상전공) 정치언론·국제학과 신소재공학과, 화학공학과, 글로벌학부 (글로벌커뮤니케이션선택전공, 글로벌비즈니스전공) 경영정보학과			기존 학과 (~에서)	복학 또는 재입학 가능 학과(~으로)
			국어국문학과, 문예창작학과	국어국문·창작학과
			영어영문학부(영어영문학전공, 아동영어학전공)	영어영문학과
			일어일문학과, 프랑스어문학과	일본·프랑스어문학과
			사학과, 철학상담학과	역사·철학상담학과
			컴퓨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광·센서공학과	컴퓨터통신무인기술학과
			멀티미디어학부(멀티미디어공학전공, 미디어영상전공)	멀티미디어학과
			정치언론·국제학과 신소재공학과, 화학공학과	정치·언론·국방학과 화공신소재공학과
글로벌학부(글로벌커뮤니케이션선택전공, 글로벌비즈니스전공), 경영정보학과	린튼글로벌비즈니스 스쿨 (글로벌비즈니스전공, 글로벌IT경영전공)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모집단위학과(전공) 통폐합에 따른 경과조치) 2016학년도 모집단위 학과(전공) 통폐합에 따른 경과조치는 다음표에 의한다.

학과	적용 기간	해당 학과에 입학한 자가 복학 또는 재입학할 시	
		해당학년 교육 과정이 개설되 어 있는 경우	해당학년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 건축학전공) 건설시스템공학과 중국경제통상학과 경제학과 법학부(특허법학전공) 행정학과 경찰행정학과	2018학 년도 까지	해당학과의 해당학년으로 복학 및 재입학	아래 표와 같이 복학 및 재입학하거나, 본인이 희망하는 학과(사범계열 및 간호학과, 건축학과는 제외)로 복학 및 재입학 할 수 있음

디자인학과 예술문화학과 회화과 의류학과	기존 학과 (~에서)	복학 또는 재입학 가능 학과(~으로)
	건축학전공(5년제)	건축학과(5년제)
	건축공학전공 건설시스템공학과	건축·토목공학과
	중국경제통상학과 경제학과	경제학과
	법학부(특허법학전공)	법학부(법학전공, 법무법학전공)
	행정학과 경찰행정학과	행정·경찰학과
	디자인학과 예술문화학과	디자인예술문화전공
	회화과	회화전공
의류학과	의류학전공	

제3조(단과대학 통폐합에 따른 경과조치) 2016학년도 단과대학 통폐합에 따른 경과조치는 다음 표에 의한다. 개정(2017.1.25.)

~에서	~으로	학과명	적용	
법과대학	법정대학	법학부 법학전공 법학부 특허법학전공 법학부 법무법학전공	2015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재적생	
사회과학 대학	법정대학	행정학과		
		경찰행정학과		
		정치·언론·국방학과		
		도시부동산학과		
		사회복지학과		
조형예술 대학	조형예술 학부	아동복지학과		
		디자인학과		
		예술문화학과		
		회화과		
		의류학과		

제4조(학과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법과대학 특허법학전공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특허법학전공의 존속은 2018학년도까지로 한다.
2. 특허법학전공에 입학하여 재학 중인 자는 제19조의 2 제1항의 이수학기에 의한 신청자격 제한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한내 전공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희망 학과(사범계열 및 간호학과 제외)로의 전공변경을 허용한다. 개정(2017.1.25.)
3. 특허법학전공에 입학한 자가 복학 또는 재입학할 시에는 본인 희망 학과(사범계열 및 간호학과 제외)의 해당학년으로 복학 또는 재입학할 수 있다. 개정(2017.1.25.)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의해 다른 학과로 전공변경, 복학 또는 재입학한 학생이 희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의해 전적학과의 다전공 또는 부전공을 인정할 수 있다.

1. 다전공 : 특허법학전공의 전공과목을 36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

2. 부전공 : 특허법학전공의 전공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하고 제1호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직과정 이수예정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변경학칙 시행 이전에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에 한하여 입학당시 학과의 표시과목으로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3조(모집단위 학과(전공) 학부제 전환 및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2016학년도 이전 입학생 중 학적변동(복학 및 재입학)으로 인하여 2017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같이 졸업하게 되는 경우 학생 희망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속을 변경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은 입학당시의 교육과정 또는 2017학년도 이후에 신설된 교육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

2017.02.28.일 당시 재적 학과 및 전공 (~에서)	2017.03.01.일 이후 변경 학부 및 전공 (~으로)
일본·프랑스어문학과	외국어문학부 일어일문학전공 외국어문학부 프랑스어문학전공
역사·철학상담학과	인문학부 사학전공 인문학부 철학상담학전공
멀티미디어학과	멀티미디어학부 멀티미디어공학전공 멀티미디어학부 미디어영상전공
건축·토목공학과	토목·건축공학부 건축공학전공 토목·건축공학부 토목·환경공학전공
경제학과	경제학부 경제학전공 경제학부 중국경제통상학전공
행정·경찰학과	행정·경찰학부 행정학전공 행정·경찰학부 경찰학전공
디자인예술문화전공	융합디자인전공

② 2016학년도 이전 입학생 중 2017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같이 졸업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입학당시 학년별 교육과정 존치기간 이내에 졸업하여야 한다. 단, 이 존치기간 중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복학 또는 재입학한 때에 해당학년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있지 않아 졸업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학생이 희망하는 학과(단, 사범대학 및 간호학과 제외)로 복학 또는 재입학할 수 있다. **개정(2017.1.25.)**

1. 2~4학년 교육과정 개설 : 2017학년도 까지
2. 3~4학년 교육과정 개설 : 2018학년도 까지
3. 4학년 교육과정 개설 : 2019학년도 까지

**제4조(학과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법정대학 도시부동산학과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신설(2016.6.14)**

1. 도시부동산학과의 존속은 2019학년도까지로 하며, 입학당시 학년별 교육과정 존치기간은 다음과 같다.
  - 가. 2~4학년 교육과정 개설 : 2017학년도 까지

나. 3~4학년 교육과정 개설 : 2018학년도 까지

다. 4학년 교육과정 개설 : 2019학년도 까지

2. 도시부동산학과에 입학하여 재학 중인 자는 이 학칙 제19조의2 제1항의 이수학기에 의한 신청자격 제한에도 불구하고 전공변경(전과)을 신청할 수 있으며, 희망 학과(사범계열 및 간호학과 제외)로의 전공변경(전과)을 허용한다.
3. 도시부동산학과에 입학한 자가 복학 또는 재입학할 시에는 본인 희망 학과(사범계열 및 간호학과 제외)의 해당학년으로 복학 또는 재입학할 수 있다.

②이 부칙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해 다른 학과로 전공변경(전과), 복학 또는 재입학한 학생이 희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의해 폐과된 전적학과의 다전공 또는 부전공을 인정할 수 있다.

1. 다전공 : 도시부동산학과의 전공과목을 36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
2. 부전공 : 도시부동산학과의 전공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하고 다전공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부 칙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학칙 제1조의 개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70조의 변경 내용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폐지에 따른 존속기간 이후 경과조치)** ① 학과 폐지로 인한 광·전자물리학과, 독일어문학과, 철학과, 도시부동산학과의 존속기간 이후 경과조치는 따로 정한다.

② 폐지에 따른 학과(전공) 존속기간이 종료된 이후 학사지도 및 행정 처리는 해당 학과가 소속된 단과대학장이 주관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변경학칙 중 제61조의 2, 제62조의 내용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7.11.7. 개정)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8.2.1. 개정)

**제1조(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모집단위 학과(전공) 단순 통폐합에 따른 경과조치)** ① 모집단위 학과 통폐합에 따른 경

과조치에도 불구하고 이 학칙 변경 당시 학과(전공) 통합 및 분리로 인해 폐지된 학과(전공)의 유사학과가 존재할 경우 폐지된 학과(전공) 재적생이 졸업하는 연도까지 폐지된 학과(전공)의 학적을 유지하거나, 사범계열 학과 및 간호학과를 제외한 본인이 희망하는 전공으로 복학 및 재입학 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은 종전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2018.5.28., 2018.8.30. 개정)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29. 개정)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4.24., 2019.12.30. 개정)

제1조(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설학과로의 전공변경(전과) 제한) 학부 및 학과폐지에 따른 경과조치에도 불구하고 사범계열 및 간호학과를 제외한 신설 학과로의 전공변경(전과)을 원하는 경우 전공변경(전과)희망 학생의 학년-학기(이수학기)에 해당하는 신설 학과의 교육과정이 개설된 경우에만 허용한다.

제3조(모집단위 학과(전공) 명칭 변경 및 학과(전공) 분리에 따른 경과조치) ① 2018학년도 이전 입학생 중 학적변동(복학 및 재입학)으로 인하여 2019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같이 졸업하게 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소속을 변경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은 입학당시의 교육과정 또는 2019학년도 이후에 신설된 교육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

2019.02.28. 당시 재적 학과 및 전공 (~에서)	2019.03.01. 이후 변경 학부 및 전공 (~으로)
전자공학과	전기전자공학과
정치·언론·국방학과	정치·언론학과
생활체육학과	스포츠과학과
컴퓨터통신무인기술학과	컴퓨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② 2019학년도 이전 입학생 중 학적변동(복학 및 재입학)으로 인하여 2020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같이 졸업하게 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소속을 변경하며, 교육과정은 입학당시의 교육과정 또는 2020학년도 이후에 신설된 교육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학칙 변경 당시 “생명·나노과학대학 화공신소재공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공과대학 화공신소재공학과”에 재적하는 자로 본다. 후단 신설(2019.12.30.)

2020.02.29. 당시 재적 학부 및 전공 (~에서)	2020.03.01. 이후 변경 학과 (~으로)
인문학부 사학전공	사학과
생명·나노과학대학 화공신소재공학과	공과대학 화공신소재공학과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공과대학 신소재공학과

**제4조(학과(전공)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문과대학 인문학부 철학상담학전공, 경상대학 비즈  
니스통계학과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철학상담학전공, 비즈니스통계학과의 존속은 2022학년도까지로 하며, 입학당시 학년별 교  
육과정 존치기간은 다음과 같다.  
가. 2~4학년 교육과정 개설 : 2020학년도까지  
나. 3~4학년 교육과정 개설 : 2021학년도까지  
다. 4학년 교육과정 개설 : 2022학년도까지
2. 철학상담학전공, 비즈니스통계학과에 입학하여 재학 중인 자는 제19조의2 제1항의 이수  
학기에 의한 신청자격 제한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한 내 전공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원하는 학과(사범계열 및 간호학과 제외)로의 전공변경을 허용한다.
3. 철학상담학전공, 비즈니스통계학과에 입학한 자가 복학 또는 재입학할 시에는 본인이 원  
하는 학과(사범계열 및 간호학과 제외)의 해당 학년으로 복학 또는 재입학할 수 있다.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해 다른 학과로 전공변경, 복학 또는 재입학한 학생이 희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의해 전적 학과(전공)을 다전공 또는 부전공을 인정할 수 있다.

1. 다전공 : 전적 학과의 모든 전공필수 과목을 포함한 전공과목을 36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
2. 부전공 : 전적 학과의 전공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하고 제1호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제5조(단과대학 신설 및 학과 이동에 따른 경과조치)** 2020학년도 단과대학 신설 및 학과 이동  
에 따른 경과조치는 다음 표에 의한다.

~에서	~으로	적용
법정대학 사회복지학과 법정대학 아동복지학과	사회적경제융합대학 사회복지학과 사회적경제융합대학 아동복지학과	2019학년도까지 입학한 재적생

부 칙(2019.6.20. 개정)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7.25., 2019.11.18. 개정)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30. 개정)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 및 제40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0.3.11. 개정)

제1조(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8년 12월 29일로 소급하여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개정 전 제3조(학생정원)를 원용한 경우에는 개정 학칙 제2조 제2항을 원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0.5.4. 개정)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첨단학과 신·증설에 관한 사항은 「대학설립·운영규정」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중 관련조항의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